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행복Together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구행명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『행복Together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	『행복Together 적금』 특약	구행명 삭제
제 1 조 약관의 적용 『행복Together 적금』(구,하나은행, 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적립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,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을 적용합니다.	**제 1 조 적용범위** "행복Together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	문구 수정 구행명 삭제
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2계좌만 가능합니다.	**제 2 조 가입대상**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2계좌만 가능합니다.	개인사업자 문구 추가
제 3 조 ~ 제 6 조 (생략)	**제 3 조 ~ 제 6 조** (좌동)	
제 7 조 이자 ① ~ ④ (생 략)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(구 하나은행)을 통한 급여 또는 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(0.1%)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	**제 7 조 이자** ① ~ ④ (좌 동)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한 급여 또는 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(0.1%)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	구행명 삭제